

신혼부부

- 자격 검증 제출서류안내(신혼부부 특별공급)
- ※ 당첨자(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포함)는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구비서류 제출일 내 견본주택으로 접수하시기 바람.
 - ※ 당첨자(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포함)는 아래 “공동서류”와 “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”, “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”를 반드시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함.

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

구분	제출유형		구비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서류	○		특별공급 서약서	-	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, 특별공급 당첨자 서약서 작성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-	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(새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사용시 본인만 접수 가능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3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3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,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
	○		복합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3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
	-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)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				
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 바람
		○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존속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3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 확인에 필요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3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-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				
신혼부부 특별공급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(1년 이상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전부 공개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	○	혼인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상기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“상세”로 발급 바람
		○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본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피부양 직계비속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3항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 확인에 필요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6.3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-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				
	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(창약신청자)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.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) ※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
		○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-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“상세” 발급
	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관련 진단서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
		○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입양의 경우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(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)	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, 해당자	비사업자의 경우(견본주택에 비치)
		○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	○	무주택 소명서류	-	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○			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	○			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
		○	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사항		○	기타서류	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등

- 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06.30.(목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 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(포함) 되어야 할 내용 : 세대 구성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 / 병동일 / 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의 다른 세대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
 -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포함),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)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- ※ 2005. 7.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(개정)으로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일반(특별)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등(초)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.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(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 명세서(직인날인))	①,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①,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자집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※ 해당직장
	일과제자 / 간이과제자 / 면제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② 세무서
자영업자	신규사업자 / 간이과제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또는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신청용 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	※ 국민연금관리공단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 ③ 사업자등록증	① 세무서 ② 등기소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세무서,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(연금신청용 가입내역확인서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
무직자		※ 비사업자 확인각서(견본주택에 비치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	※ 견본주택 비치 ※ 세무서/홈텍스

- ※ 군복무중이어서 건강(의료)보험증이 없는 경우 :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재직업군인 제와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
- ※ 종교기관(교회, 사찰 등)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: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부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
- ※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: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,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
- ※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: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,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
- ※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
- ※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
-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
-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- ※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06.30.(목)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
- ※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,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.
-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.